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과 장 김영신 사무관 (공석) 주무관 고선미	044-200-5530 044-200-5536 044-200-5537

제1조(목적) FTA 등 국제 수산업 여건변화에 능동적 대응 및 기후온난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의 증강을 위하여 자원회복이 필요하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자를 방류함으로써 어업생산력 증대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산종자 방류사업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종자방류)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방류장소 및 품종 등) ① 수산종자의 방류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 면 : 해당품종에 적합한 인공어초, 바다숲 조성 등 시설수역 또는 방류 품종의 자연산 치어가 서식하거나 방류종자의 생존이 가능한 수역
2. 내수면 : 「내수면 어업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용 수면

② 수산종자를 방류할 수 있는 품종 및 종자의 크기와 시기는 각 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서 정한 품종 또는 그 외 품종 중 자원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종의 수정란을 방류하고자 할 경우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1.에서 정한 품종의 수정란을 방류하고자 할 경우 자연에서 채집한 어미 또는 유전적 다양성을 관리한 어미 집단에서 생산된 수정란이어야 하며, 교배지침에 의한 수정란 생산 등 산란 참여 어미 편중에 따른 후손 집단의 유전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생산된 수정란이어야 한다.

제4조(방류의 금지)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종자를 방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조피해 발생 직전에 가두리 등에서 사육중인 양식어류를 긴급방류할 경우에는 「적조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방류 지침」을 따를 수 있다.

1. 어류 전장 10cm이상(다만, 자원의 긴급한 회복을 위해서 실시하는 방류의 경우 국립수산물과학원과 협의하여 10cm이상 어류에 대해서도 방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뱀장어는 제외하며 점농어와 민어는 12cm 이상)
2. 눈이 없는 쪽(무안측)에 흑색반문의 면적이 10% 이상인 넙치·강도다리·가자미류·문치가자미 종자
3.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
4. 척추뼈가 휘었거나 꼬리지느러미가 뒤틀려 있는 등의 기형어류종자
5.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이상된 수산종자, 다만, 전복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24개월 이상, 오분자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16개월 이상, 뱀장어는 입식후 3개월 이상의 수산종자
6.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7. 수산자원관리법 제 42조의2의제2항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대상품종 중 방류종자인증이 되지 않은 종자

제5조(종자방류사업의 주관기관 등) ① 종자매입방류사업의 주관기관은 시·도지사로 한다.

② 사업담당부서라 함은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실 수산자원정책과, 시·도(시·군·구) 수산관련 과를 말한다.

③ <삭제>

제6조(종자방류사업의 집행 등) ① 종자방류사업의 집행은 시·도지사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지방비 소요액의 50% 이상을 부담할 경우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매입종자방류사업 전체 또는 일부를 한국 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이하 “공단 이사장”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매입종자방류사업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 시·도지사는 사업집행 과정에 대한 현장 확인 등 감독을 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예산의 10%를 효과조사 사업비로 별도 편성하여야 한다.
- ⑤ 국립수산과학원장(수산연구소장·내수면 관련 연구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 및 공단 이사장은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 과학원장, 공단 이사장 및 어업인 등은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수정란 생산용 어미의 유전적 다양성 관리와 방류종자의 유전적 다양성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유전적 다양성이 관리된 어미에서 생산된 수정란을 방류하거나 매입방류 사업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추진절차에 따르거나 방류종자인증제를 준용할 수 있다.

제7조(방류종자 및 방류대상수역 선정) ① 방류종자는 민간수산종자 배양장에서 자연산 어미 및 우량 인공산 어미(수정란)에 의해 생산된 종자로 방류 후 자연환경에 적응력이 높은 건강한 종자이어야 한다.

- ② 방류대상수역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역으로 하되, 다음 각호를 준수해야한다.
 1. 전복, 오분자기 등 정착성 수산동물을 방류할 때에는 불가사리 구제가 필요한 해역인 경우 사전에 불가사리를 없애는 등 해적 생물 구제를 한 후 방류 사업을 실시할 것
 2. 해조류가 충분하지 못한 지역은 피할 것
 3. 수온이 7℃ 이하로 하강하였을 때에는 방류를 금지 할 것
 4. 내수면 품종을 방류할 때에는 사전 서식실태를 조사하여 외래동물이 서식하지 않는 장소를 우선 선정하되, 외래어종 서식이 우려되는 수면 내의 방류는 사전에 퇴치 후 방류사업을 실시 할 것
 5. 방류한 종자의 생존을 제고를 위해 암반 등 방류 품종의 은신처가 존재하는 수역을 우선 고려

6. 기타 방류효과를 저해할 수 있는 경우 방류를 제한 할 것

- ③ 내수면 수역에 대하여는 공공용수면관리자 또는 시·도 내수면연구소와 협의 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부합되는 지역으로써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하였 거나 또는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에서 해당지역에 방류를 요청한 경우 방류 대상수역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⑤ 어촌계 또는 자율관리공동체에서 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하면서 해당수 역에 방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방류대상 수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⑥ 시·도지사는 방류효과조사 대상품종의 방류대상수역이 선정된 후 원활한 방류효과조사를 위해 방류효과조사 대상수역으로 지정하고 동일한 수역에 최소 3년간 지속적인 방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종자방류 사업신청 등) ① 종자방류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어촌계, 자율관 리공동체 또는 업종별·지구별 단위 수산업협동조합에서는 방류장소 및 방류 품 종 등을 포함한 종자방류사업 신청서를 방류실시 전년도 11월말까지 시장·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종자방류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시·도지사 에게 방류실시 전년도 12월15일까지 종자방류사업 신청서 접수 현황을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2018년도 수산종자관리사업의 경우에는 2017년 수산종자관리 사업 지침에 따른다.

- ② 시·도지사는 방류대상수역 결정전에 방류 대상수역 관할 어촌계 또는 자율관 리공동체로부터 방류대상수역에 대해 방류 후 1개월 이상 방류종자의 포획이 우려되는 어망을 사용하는 어업 등에 의한 조업 금지 및 불법조업 감시 이행 협약서(별첨 15)를 제출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의 이행 협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방류대상수역을 변경하여야 하며, 이행 협약서 제출 후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수역에 대해 다 음해부터 3년간 방류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 ④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방류 품종 및 해역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시·군·구별 방류 품종 및 해역 선정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방류 품종, 크기, 시기 등의 조정) 시·도지사는 수산자원 조성, 생태계보전, 시험방류 등을 이유로 별표1과 별표2에 규정된 품종 및 종자의 크기와 시기외에 예외적으로 방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입찰지연으로 인한 조정은 제외한다.

제10조(종자생산 확인(자가생산 확인)) ① 인공종자를 생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에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종자 종류별 확인시기별로 확인기간 종료 7일전까지 종자생산 확인신청서(별첨4)를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시·도 내수면연구소장 포함)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고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별첨5, 이하 “종자생산납품확인서”라 한다)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방류종자인증 대상품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종자생산자가 종자생산 후 자가생산 확인과정 중에 사망, 부도 등의 사유로 수산종자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 받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생산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종자생산 확인 후 종자생산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자생산확인서를 발급 받은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종자생산확인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③ 수산지도 담당기관의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종자생산확인을 위해 친어구입 또는 수정란 구입 관련 증빙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종자생산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종자생산납품확인서의 발급, 재발급 등) ①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은 관내 종자생산 어업인으로부터 종자생산 확인 신청(별첨 4)을 받은 경우에는 종자생산자단체(별첨 8) 등에 통보하여 희망할 때에는 생산자단체와 함께 어미 사육 실태, 종자 생산량, 종자 건강 및 발육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 확인한 날로부터 7일이 내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시·도지사는 종자생산자 단체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입회인이 경쟁업체로 정당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입회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은 뱀장어의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산 종자 구입 상황 및 외국산 종자 구입 여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하여 국내산 종자(*Anguilla japonica*)에 대해서만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한다.
- ③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④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은 종자생산자의 요청에 따라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단순 오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제12조(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을 위한 확인·지도) ①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은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받은 종자생산자에 대하여 우량종자 납품을 위한 확인·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으로부터 종자생산 확인 협조를 요청받은 어업인 및 종자생산자단체는 시·도 관할지역의 업체별 종자생산량 및 보유현황, 건강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은 자가종자생산 확인을 위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수시로 확인·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은 우량 종자 확보를 위해 본인소유시설 또는 임차시설에 이동사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타 지역으로 이동 사육 시 이동할 시·도 담당기관과 최종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발급기관에 대해 협의 후 이동할 종자의 제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종자생산납품확인서의 발급제한 및 반납) ① 종자생산자는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발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종자생산자단체의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종자가 폐사되거나 양식장에 판매하는 등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동 확인서를 발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종자생산 납품 물량 변동 및 실적 보고 등) ① 종자생산자는 종자생산납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납품 물량 변동 및 실적이 발생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에 그 증빙서류와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을 지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종자생산납품 확인서 원본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양성중인 수산종자가 폐사되거나 납품이 완료된 때에는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기관에 반납토록 하여야 한다.

③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종자생산납품확인서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제15조에 따른 관내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의 입찰에 참가 가능한 종자생산자의 물량 확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신고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입찰) ① 시·도지사는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관내(관할 시·도) 종자생산자 중 입찰물량 이상의 종자를 보유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관내 종자생산자로 참가자를 제한 할 수 있고, 2인 미만일 때에는 인근 시·도의 종자생산자를 포함하여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종자생산납품 확인서 원본 및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단,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방류인증품종의 경우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만 제출)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집행기관의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개찰시 자동제외 한다.

③ 종자생산확인서 없이 전자 입찰에 참여한 자 및 종자방류와 관련하여 물의(범죄사실 확인)를 일으킨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 자격을 제한한다.

④ 시·도지사는 관내 종자생산자 중 어종별로 1인이 보유한 종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량의 공급이 불가능 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종자를 매입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희망수량 경쟁입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가 종자방류효과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야성화

훈련시설(해상가두리에서 종자양성시설 등)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방류품종 중 부화 이후부터 종자까지 사육기간이 짧고 변태(變態) 과정에서 대량폐사가 발생하는 갑각류(보리새우, 꽃게, 대하, 물렁가시 붉은새우, 왕밤송이게, 동남참게)의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5조제1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류물량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동 지침 제1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0조의2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유물량이 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응찰한 물량과 1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5조의2(방류종자인증 대상품목 입찰) ① 시·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2조의2에 따른 방류종자인증제의 효과 제고를 위하여 유전자다양성이 확보된 종자 생산자 선정을 위해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입찰 결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의 업체명, 연락처, 대표자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업무 수탁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전 검수 시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에게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받고 발급 이후 7일 이내 집행기관인 시·군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시·도지사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예정 방류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전에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이 봉인한 후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관련검사가 가능한 기관(별첨9)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관내 종자생산자 중 어종별로 1인이 생산할 수 있는 종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량 수준으로 공급이 불가능 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는 계약 물량에 대비 납품 물량이 부족한 경우 부족물량 확보를 위해 인근 시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하거나 제4항과 같이 희망수량 경쟁입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납품계약) ①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에 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2.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3.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단,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방류인증품종의 경우 예외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품종별 매입단가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단가로 한다.

③ 납품계약은 “종자생산납품확인서(별첨 5)”와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별첨 11, 이하 “검사증명서”라 한다)”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단,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대상품종은 납품계약 이후 확인한다.

제17조(사전 현지 확인) ① 시·도지사는 낙찰대상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품종 종자의 수산생물 전염병 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별첨 1)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어미는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

- ② 낙찰대상자는 응찰마감일 이후 언제든지 시·도지사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③ 사전 현지 확인은 방류지역의 어업인 대표, 종자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종자의 크기 및 물량, 수산생물 전염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사전 현지 확인 시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이 봉인한 후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 22조에 의한 관련검사가 가능한 기관(별첨 9)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⑤ 뱀장어는 30개체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 담당공무원이 봉인한 후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18조(수산생물 전염병검사) ① 시·도지사가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가능기관에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별첨 10)에 품종별로 50개체(10cm이상일 경우 30개체) 이상 활어상태의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검사 신청용 시료는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양식장에서 보유중인 물량의 일부만 방류하고자 할 경우 방류물량이 포함되는 모든 양식장 단위시설에서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시료채취 수조 및 노지 등이 표기된 양식장 도면과 수조별 사육물량을 표기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방류품종별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항목 및 합격기준은 “별첨 13”과 같다. 기타 세부적인 실시요령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기관은 검사 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13일(갑각류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증명서(이하, “검사증명서”라 한다, 별첨 11)를 검사 의뢰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연장기간 등을 지체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1. 검사업무로 인하여 다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검사결과 수산생물 전염병의 감염이 의심되어 확정 진단이 필요한 경우
- ⑤ 수산생물 전염병의 감염이 의심되어 확정 진단을 실시할 경우, 해당 양식장의 동일 품종에 대해서는 확정 진단의 대상이 되는 물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종 확정 진단 결과 통보 및 방역조치 등의 사후조치가 이행되기 전에는 새로운 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 ⑥ 수산생물 전염병에 대한 확정 진단을 실시할 경우, 검사신청 기관은 해당 양식장의 소유주가 확정 진단 결과 통보 이전에 사육 물량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양식장의 소유주가 사육물량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장과 협의하여 수산생물방역관의 입회하에 소각 또는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할 수 있다.
- ⑦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방류 후에 해당 양식장에 검사완료 물량이 남아 있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 검사 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5일이 경과하면 같은 양식장의 검사완료 물량이라도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 ⑧ 검사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완료 물량 중 방류 후에 남아있는 물량에 대하여 수량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 후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별첨 12)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완료 물량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해당 양식장의 사육 물량이 기재된 양식장 도면, 방류완료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검수조서(별첨 2) 또는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별첨 5)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⑨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기준 등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종자검수) ① 시·도지사는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일시와 장소 등 납품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전까지 납품계약 체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종자의 검수는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 하여야 하며, 종자로서 합당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정된 경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 하여야 한다.
- ④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본 지침 상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매회 중량 측정값을 대장에 기입하여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평균크기를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방류종자의 크기를 중량으로 제한하는 품종은 중량을 우선 측정하여야 한다. 단, 전체 중량 측정 결과를 정리한 대장을 검수조서 (별첨 2-1, 2-2)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 ⑥ 검수 및 방류 시에는 시·도(해당 시·군·구 포함), 시·도립 수산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및 방류해역 어촌계 대표(내수면인 경우 내수면 어업계 대표) 또는 대표자가 지명(위임)한 1인 이상의 어촌계원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는 종자생산자단체에 검수 및 방류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여 입회를 희망할 경우 소속 임원 등 관계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을 제고하여야 한다.
- ⑦ 시·도지사는 공단의 유전적 다양성 분석 계획에 따라 요청이 있을 경우, 종자 검수 시 전복, 넙치, 조피볼락, 해삼, 참돔, 꽃게 품종에 대해 유전적 다양성 분석용 시료를 50개체 이상 채취하여 94% 알콜(에탄올)에 고정한 후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첨 14).

제20조(운송 및 방류) ① 종자생산자와 납품계약 및 납품(방류)이 완료된 시·군 및 당해 어촌계에서는 종자생산납품확인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시·군 종자방류 업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한으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시·도지사는 방류종자의 활력 강화를 위하여 고수온기 등을 피하여 종자의 운송과 방류를 실시하여야 하며, 방류종자의 생존율 등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종자방류는 종자가 자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조류 등이 많이 서식하는 내만의 얕은 바다에 방류하거나, 전복·해삼 등 저서품종은 잠수하여 살포하는 등 어류의 생태 및 지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종자방류 시 유관기관 및 단체, 어촌계 대표 등 다수 어업인이 참여하게 하여 자원조성 및 보호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검수자 및 방류입회자는 방류 완료 후 이와 관련된 조서(별첨 2~3)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납품검사 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효과조사) ① 시·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의 효과조사를 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의 효과조사를 실시한 공단 이사장은 효과조사 대상품종, 조사 해역·방법·시기 등을 정하고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공단 이사장은 효과조사 대상품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기간은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포함하여 4년 이상으로 한다.
 1. 방류종자의 이동 및 성장 등의 파악을 위한 방류종자 표지에 의한 추적조사
 2. 어종별 시기별 생산량, 혼획율 및 연령별 회수율 등의 조사
 3. 방류어종별 유전적 조성 및 지역별 자연집단의 유전학적 구조 파악, 지속적인

방류에 따른 지역집단의 영향 등의 파악을 위한 유전학적 조사

4. 종자방류사업비에 대한 직·간접 투자효과 분석 등 경제성 분석

5. 기타 종자방류사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방류효과 제고에 필요한 조사

④ 공단 이사장은 원활한 효과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일부를 전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공단 이사장은 효과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사후관리) ①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수협 및 어업인들에게 방류내용, 방류효과와 자원조성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방류수역에 대해 일정기간 어구제한, 포획금지기간 등을 설정하는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수산종자 매입·방류 집행지침에 의한 계약조건을 부여할 경우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한 방류종자가 확보될 수 있도록 건강종자의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업자가 종자생산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를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계약이 체결된 후 검수에서 방류까지의 주요과정을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수산종자관리사업 집행기관은 종자방류 후 그 결과를 해당 종자의 종자생산 납품확인서를 발급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기타사항) ①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조성금)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재원이나 순수지방비,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에 의한 민간인, 민간단체에서 자가생산 또는 매입방류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지침을 준용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등 종자방류 주관 또는 집행기관에서는 방류 실적은 방류 후 1개월 이내 한국수산자원공단 방류종자관리시스템(<http://seed.fira.or.kr>)에 입력하고 당해연도 계획은 당년 2월이내 입력하여야 한다. 공단 이사장은 당해연도 종자방류 실적을 익년도 3월 중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보조금의 집행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집행하여야 한다.
- ④ 종자방류 사업과 관련하여 입회자 등 외부 민간인이 자문이나 국가업무에 조력을 한 경우 각 지자체는 필요시 계상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체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 방류품종

구 분	방 류 품 종
합 계	67 종
해 면 (5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해역 공통 : 전복, 넙치, 자주복, 해삼, 쥐노래미, 쥐치, 말쥐치, 볼락, 황점볼락, 조피볼락, 개볼락, 붉은쏨뱅이, 쏨뱅이, 돌돔, 참돔, 감성돔, 문치가자미, 돌가자미, 농어, 점농어, 능성어, 대구, 비단가리비, 개조개, 주꾸미, 가리맛조개, <u>참문어, 소라</u> ○ 동해안 : 참가리비, 강도다리, 개량조개, 북방대합, 뚝지, 물렁가시붉은새우, 명태 ○ 서해안 : 황복, 대하, 보리새우, 가숭어, 민어, 꽃게, 참조기, 꼬막, 민꽃게, 바윗털갯지렁이, 짱뚱어, 백합, 박대 ○ 남해안 : 보리새우, 꽃게, 왕우럭, 꼬막, 참조기, 민어, 대하, 민꽃게, 왕밤송이게(털게), 바윗털갯지렁이, 짱뚱어, 백합 ○ 제주해역 : 자바리, 오분자기, 참조기 <p>* 시범방류 품종은 5년간 시행 후 방류품종으로 최종 반영 여부 결정 <시범방류품종> 2019년 시범방류 품종 : 주꾸미, 명태, 박대, 가리맛조개 2020년 시범방류 품종 : <u>참문어, 소라</u></p>
내수면 (15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게, 잉어, 동자개, 붕어, 메기, 쏘가리, 꺾지, 뱀장어, 자라, 은어, 다슬기, 대농갱이, 동남참게, 미꾸라지(미꾸리), 기수재첩 - 다만, 뱀장어, 메기, 쏘가리, 꺾지는 기존에 서식이 확인된 장소에만 방류

※ 참게(동남참게)는 하천 및 호수에 방류 하고, 다슬기 품종에 대해서는 다슬기 종자 생산확인 신청서(별첨 6)에 어미확보 수계, 어획지역, 어미확보 어업인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다슬기 종자생산 및 낱품(방류) 확인서(별첨 7)에 기재된 어미확보 수계와 동일한 수계에 방류하여야 한다. 수계는 한강권(임진강 포함), 낙동강권(동해안 포함), 금강권(서해안 포함), 섬진강·영산강권으로 구분한다. 다만, 수계구분이 곤란할 경우는 공공용수면관리자 또는 시·도 내수면연구소와 방류품종의 적정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의견을 협의하여 방류한다.

별표 2. 종자의 크기 및 시기

○ 해면품종(52종)

순번	품종명	방류크기	방류시기	비고
1	전복	각장 4.0cm 이상	3~6월, 10~11월	단, 제주도는 3~6월, 10~12월
2	넙치	전장 6.0cm 이상	5~7월	
3	자주복	전장 5.0cm 이상	9~10월	
4	해삼(홍해삼)	체중 1.0g~7.0g	3~6월, 9~12월	
5	취노래미	전장 5.0cm 이상	3~6월	
6	취치	전장 4.0cm 이상	5~10월	
7	말취치	전장 5.0cm 이상	3~10월	
8	불락	전장 5.0cm 이상	4~8월	
9	황점불락	전장 5.0cm 이상	4~8월	
10	조피불락	전장 6.0cm 이상	6~10월	
11	솜뱅이	전장 5.0cm 이상	6~11월	
12	붉은솜뱅이	전장 5.0cm 이상	6~12월	
13	돌돔	전장 5.0cm 이상	5~10월	
14	참돔	전장 5.0cm 이상	5~10월	
15	감성돔	전장 5.0cm 이상	5~10월	
16	문치가자미	전장 4.0cm 이상	4~9월	
17	돌가자미	전장 4.0cm 이상	4~9월	
18	농어	전장 6.0cm 이상	6~10월	
19	점농어	전장 6.0cm 이상	3~6월	
20	능성어	전장 5.0cm 이상	8~10월	
21	대구	전장 4.0cm 이상	2~5월	
22	비단가리비	각장 2.0cm 이상	9~11월	
23	참가리비	각장 2.0cm 이상	10~12월	
24	강도다리	전장 6.0cm 이상	6~11월	
25	황복	전장 5.0cm 이상	6~9월	

순번	품종명	방류크기	방류시기	비고
26	대하	전장 1.2cm 이상	5~7월	
27	보리새우	전장 1.2cm 이상	8~11월	
28	가숭어	전장 6.0cm 이상	6~8월	
29	민어	전장 6.0cm 이상	4~6월, 10~12월	
30	꽃게	<u>갑폭장</u> 1.0cm 이상	5~10월	
31	참조기	전장 5.0cm 이상	5~10월	
32	오분자기	각장 2.0cm 이상	3~6월, 10~11월	
33	개조개	각장 0.6cm 이상	3~6월, 9~11월	
34	개불락	전장 5.0cm 이상	6~9월	
35	자바리	전장 5.0cm 이상	8~11월	
36	개량조개	각장 1.0cm 이상	4~6월, 9~12월	
37	북방대합	각장 1.0cm 이상	4~6월, 9~12월	
38	뚝지	전장 1.5cm 이상	2~4월	
39	왕우럭	각장 0.6cm 이상	<u>3~6월, 10~12월</u>	
40	꼬막	각장 1.0cm 이상	5~10월	
41	왕밤송이게(털게)	<u>갑폭장</u> 0.7cm 이상	3~5월	
42	민꽃게	<u>갑폭장</u> 1.0cm 이상	5~10월	
43	바윗털갯지렁이	체중 0.01g 이상	8~10월	
44	짱뚱어	전장 2.0cm 이상	8~9월	
45	물렁가시붉은새우	전장 1.5cm 이상	5~6월, 11월~2월	
46	백합	각장 0.5cm 이상	5~6월, 9~11월	
47	주꾸미	전장 0.5cm 이상	6~7월	
48	박대	전장 4.0cm 이상	9~11월	
49	가리맛조개	전장 1.0cm 이상	3~6월	
50	<u>명태</u>	<u>전장 5.0cm 이상</u>	12~5월	
51	<u>참문어</u>	<u>전장 1~1.5cm</u>	<u>6~11월</u>	
52	<u>소라</u>	<u>각장 1.0cm 이상</u>	<u>5~7월</u>	

○ 내수면품종(15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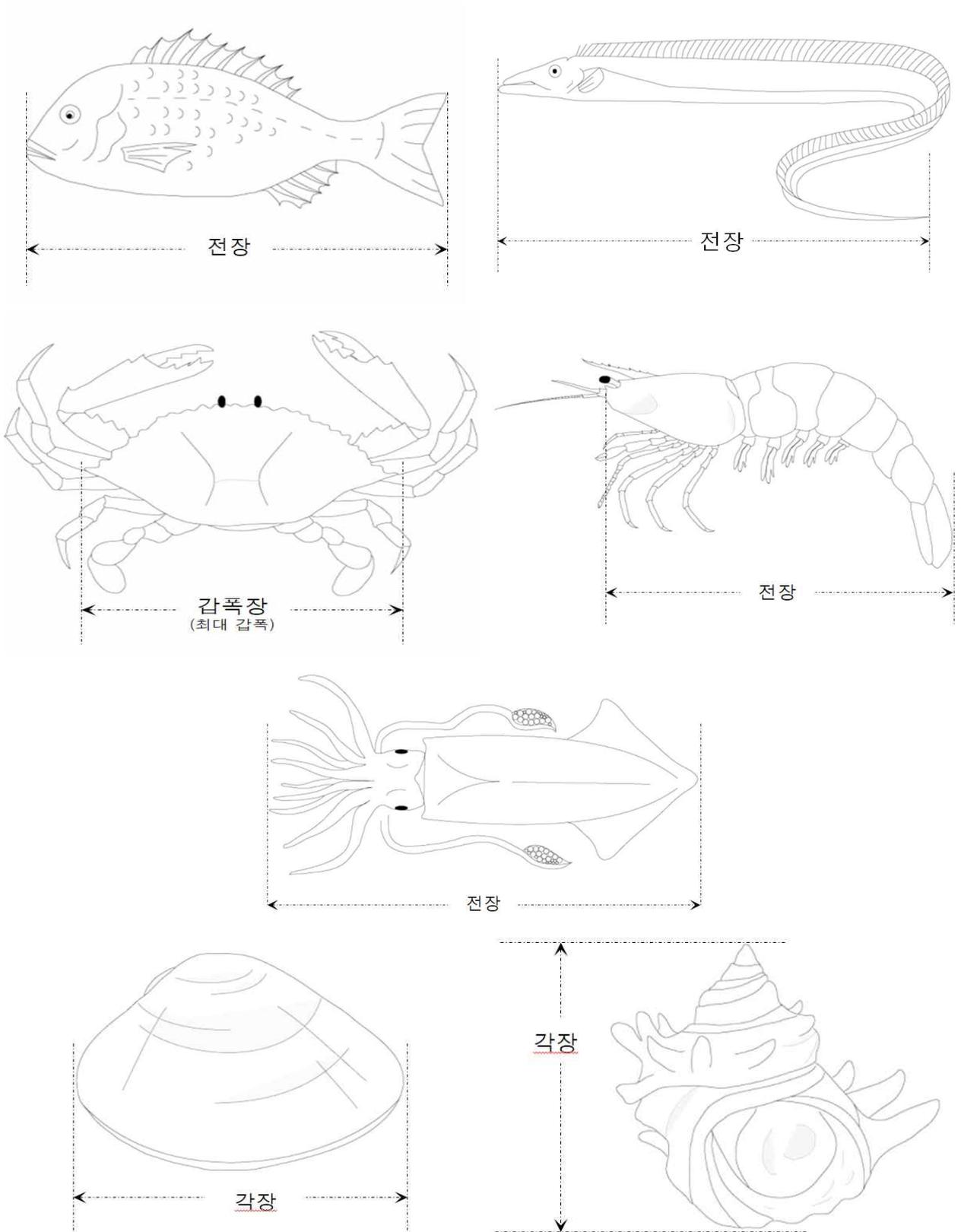
순번	품종명	방류크기	방류시기	비고
1	참 계	갑폭장 0.7cm 이상	5~7월	
2	잉 어	전장 6.0cm 이상	5~10월	
3	동자개	전장 4.0cm 이상	5~9월	단, 충북도는 3~9월
4	붕 어	전장 4.0cm 이상	5~10월	
5	메 기	전장 6.0cm 이상	5~9월	
6	쏘가리	전장 3.0cm이상	6~10월	
7	걱 지	전장 3.0cm 이상	8~10월	
8	뱀장어	전장 10.0cm 이상	3~7월	
9	자 라	각장 2.5cm 이상	8~9월	
10	은 어	전장 5.0cm 이상	3~7월	
11	다슬기	각고 0.7cm 이상	4~11월	
12	대농갱이	전장 5.0cm 이상	5~10월	단, 충북도는 3~10월
13	동남참계	갑폭장 0.7cm 이상	6~8월	
14	미꾸라지(미꾸리)	전장 4.0cm 이상	6~8월	
15	기수재첩	각장 5.0mm 이상	4~6월, 9~11월	

○ 내수면 기타품종은 시·도지사가 종자생산 여건 등 지역특성을 감안, 공공
용수면관리자 또는 시·도 내수면연구소와 협의 후 별도로 정함

○ 크기의 기준편차

- 크기의 편차는 ±10% 이내

○ 수산 방류 종자의 종류별 체장 측정도



별표 3.

종자별 종자생산납품확인 기간과 횟수

확인 시기 종류		1차 확인	2차 확인	3차 확인
인공종자		부화 이후 20일 이내	부화 이후 30~60일 이내	
예외	갑각류 (참게, 동남참게 제외)	친어확보 후 부화 이후 7일 전후	필요시 2차 확인 가능	
	돌돔, 귀치류, 뚝지	부화 이후 40일 이내	부화 이후 60일 이내	
	돌가자미, 문치가자미	부화 이후 30일 이내	부화 이후 60일 이내	부화 이후 120~150일 이내
	내수면 품종	부화 이후 30일 이내 (참게, 동남참게, 쏘가리 품종은 부화 후 20일 이내)	방류평균 크기가 80% 이상 도달 시(단, 다슬기는 각고 4~5mm일 때 확인)	
	해삼	부화 이후 30일 이내	채묘 이후 60일 이내	채묘 이후 100~130일 사이
	전복	부화 이후 30~40일경	부화 이후 100~150일 사이	부화 이후 12개월 이상 24개월 사이 단, 제주도는 부화 이후 300~320일 사이
	오분자기	부화 이후 50~60일 사이	부화 이후 90~100일 사이	부화 이후 150~180일 사이
	백합, 개조개, 왕우럭	부화 이후 60일경	부화 이후 100일경	
	바윗털 갯지렁이	부화 이후 50~60일 사이	부화 이후 100일 이내	
	뱀장어	입식 이후 30일 이내		

* 단, 성장이 빠른 메기는 시·도 수산 지도·담당기관장이 1차 확인 후 종자생산확인서 발급

<별첨 1>

사전현지확인

○ 품 종 :

○ 물 량 : 마리(kg)

상기 종자에 대하여 ○○○○년 ○○월 ○○일 사전 현지 확인 검수한 결과,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수자

○○시·도(또는 시·군·구) 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직급 ○○○(인)

입회자

○○시·도립수산연구소 직급 ○○○(인)

○○수산사무소장 직급 ○○○(인)

○○어촌계(또는 어업인 대표) 직급 ○○○(인)

○○협회 직급 ○○○(인)

○○종자생산자 직급 ○○○(인)

<별첨 2-1>

검 수 조 서

1. 품 종 :

2. 물 량 : 천미(kg)

○ 1차 :

○ 2차 :

○ 3차 :

차수	종 자		검 수		마리당 평균	
	전장 or 각장	중량	g	마리	g	크기
1차	cm ~ cm	g ~ g	g	마리	g	cm
2차	cm ~ cm	g ~ g	g	마리	g	cm
3차	cm ~ cm	g ~ g	g	마리	g	cm
·	cm ~ cm	g ~ g	g	마리	g	cm
평균	cm ~ cm	g ~ g	g	30마리	g	cm

- ※ 검수 중량은 종자 종류에 따라 100g 또는 kg, 30마리수의 중량을 ○○○g으로 하여 환산하여야 한다.(예 : 100g → 60, 57, 62마리, 30마리 → 70, 75, 68g)
- ※ 각 차수별 검수자는 차수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수를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 매회 중량 측정값은 <별첨 2-2>의 종자검수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상기 종자에 대하여 년 월 일 검수한 결과,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3. 검수자	1차 소속	직위	성명	(인)
	2차 소속	직위	성명	(인)
	3차 소속	직위	성명	(인)

<별첨 2-2>

종자검수대장(00 차)

(2000. 0. 00)

순서	중량(kg, cm)	누계	순서	중량(kg, cm)	누계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별첨 3>

입 회 조 서

- 방류품종 :
- 방류해역 :
- 물 량 : 마리(kg)

상기 종자에 대하여 ○○○○년 ○○월 ○○일 검수한 결과, 당초 계약서 대로 ○○해역에 방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수자

○○시·도(또는 시·군·구) 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직급 ○○○(인)

입회자

○○시·도립수산연구소 직급 ○○○(인)

○○수산사무소 직급 ○○○(인)

○○어촌계(또는 어업인 대표) 직급 ○○○(인)

○○협회 직급 ○○○(인)

○○종자생산자 직급 ○○○(인)

<별첨 4>

종자생산확인 신청서

1. 양식장 개요

양식장명		허가 또는 신고 번호	
대 표 자			
연 락 처		휴 대 폰	
소 재 지			

2. 친어 확보

어 종 명	친 어 수	친어구입 경로 (주소, 연락처)	비 고

3. 종자생산

어 종 명	부화일	치어보유 수	비 고

※ 갑각류의 경우 친어확보 사항만 기재 가능

상기와 같이 종자를 생산하여 사육하고 있으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00 양식장 대표 ○ ○ ○ (인)

※ 허가증 사본 첨부

<별첨 5>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

1. 양식장 개요

양식장명		허가 또는 신고 번호	
대표자			
소재지			
양식장 규모	친어지 : m ² 개소, 사육지 : m ² 개소, 치어사육지 : m ² 개소		

2. 친어 사육실태

어종명	친어수	수조수(m ²)	친어상태	비고

3. 종자생산 및 납품현황

어종명	부화일자	치어보유수 (추정)	치어크기	치어상태	납품현황			
					일자	수량	집행주체	확인

4. 종자확인자 : 000수산사무소 홍길동, 한국해산종자협회 장길산

5. 확인서 발급조건

- 확인서 발급 이후 양성중인 수산종자가 폐사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종자방류사업이 아닌 양식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 확인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발급기관(○○○○○○)에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납품계약 완료시까지 발급기관(○○○○○○)의 현장 확인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를 제출받은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추진기관은 사후관리를 위해 발급기관에 계약사항 등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종자를 생산하여 사육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00수산사무소장, 00내수면연구소장

<별첨 6>

다슬기 종자생산확인 신청서

1. 양식장 개요

양식장명		허가 또는 신고 번호	
대 표 자			
연 락 처		휴 대 폰	
소 재 지			

2. 어미 확보

종 명	어미수	어미 확보수계	어획지역	어미확보 어업인	친어구입경로 (주소, 연락처)	비 고

3. 종자생산

어 종 명	부화일	치패보유 수	비 고

상기와 같이 종자를 생산하여 사육하고 있으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00 양식장 대표 ○ ○ ○ (인)

<별첨 7>

다슬기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

1. 양식장 개요

양식장명		허가 또는 신고 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양식장 규모	친어지 : m ² 개소, 사육지 : m ² 개소, 치어사육지 : m ² 개소		

2. 어미 사육실태

종 명	어미수	수조수(m ²)	어 미 상 태	어미확보수계	비고

3. 종자생산 및 납품현황

종명	부화일자	치패보유수 (추정)	치패크기	치패상태	납품현황			
					일자	수량	집행주체	확인

4. 종자확인자 : 000수산사무소 홍길동, 한국해산종자협회 장길산

5. 확인서 발급조건

- 확인서 발급 이후 양성중인 수산종자가 폐사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산 종자방류사업이 아닌 양식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 확인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급기관(○○○○○○)에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납품계약 완료시까지 발급기관(○○○○○○)의 현장 확인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를 제출받은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추진기관은 사후관리를 위해 발급기관에 계약사항등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종자를 생산하여 사육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00수산사무소장, 00내수면연구소장

<별첨 8>

종자생산자단체 현황

단체명	주소	연락처
(사)한국수산종자산업협회	충남 서산시 고운로 276 106동 1302호	전화 : 041-665-7283 팩스 : 02-6455-5550 041-681-6282
(사)한국해삼협회	경남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33, <u>농어업교육관2층</u>	전화 : 055-863-9393 팩스 : 055-863-0233
(사)한국전북종자협회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고금동로 29-23	전화 : 061-553-8870 팩스 : 061-553-8874
(사)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대전 서구 문정로 2번길 33 스위트빌 2차 204호	전화 : 042-485-5121 팩스 : 042-485-5120
(사)패류인공종자협회	경남 거제시 둔덕면 내평4길 82	전화 : 055-638-2337 팩스 : 055-638-2474

<별첨 9>

수산물 전염병검사 가능기관

기 관		주 소	담 당
국립수산 과학원	수산방역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216	전화 : 051)720-3031 팩스 : 051)720-3039
	동해수산연구소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해안로 1194	전화 : 033)660-8648 팩스 : 033)661-8515
	서해수산연구소	인천광역시 중구 선녀바위로 14	전화 : 032)745-0740 팩스 : 032)745-0619
	남해수산연구소	전남 여수시 화양면 세포당머리길 22	전화 : 061)690-8995 팩스 : 061)685-9073
	제주수산연구소	제주시 외도동 연대마을길 6	전화 : 064)750-4350 팩스 : 064)743-5883
	중앙내수면연구소 내수면양식연구센터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명로 25길 55	전화 : 055-540-2781 팩스 : 055-542-2231
	남동해수산연구소	경남 통영시 산양읍 산양 일주로 397-68	전화 : 055)640-4732 팩스 : 055)641-2036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 면 영흥남로 247번길 313	전화 : 032)883-0399 팩스 : 032)440-8876
경기도	해양수산자원 연구소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상광길 23-2	전화 : 031)8008-6505 팩스 : 031)773-8359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경남 통영시 통영 해안로 240 2층	전화 : 055)254-3533 팩스 : 055)254-3519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어업기술센터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111-1	전화 : 054)240-0331 팩스 : 054)242-1641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남부지부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162	전화 : 061)550-0622 팩스 : 061)552-0066
	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부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	전화 : 061)655-6962 팩스 : 061)654-2155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 수산질병센터	전북 군산시 대학로 255	전화 : 063)290-6942 팩스 : 063)290-6949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수산물안전성센터	충남 서산시 잠흥 2길 68	전화 : 041)635-7876 팩스 : 041)663-0656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수산물안전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해안로 292	전화 : 064-710-8513 팩스 : 064-710-8505

<별첨 10>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3일(갑각류는 10일)
------	------	--------------------

신청인	성명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종자 또는 치어 관련 사항	품종	개체수, 크기(cm)	업체명(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방류 관련 사항	방류품종지정	[] 해양수산부, [] 지방자치단체, [] 그 밖의 자
	수송방법	
	방류수량 [사업금액(천원)]	
	방류(예정)장소	
	방류(예정)일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류 수산생물의 전염병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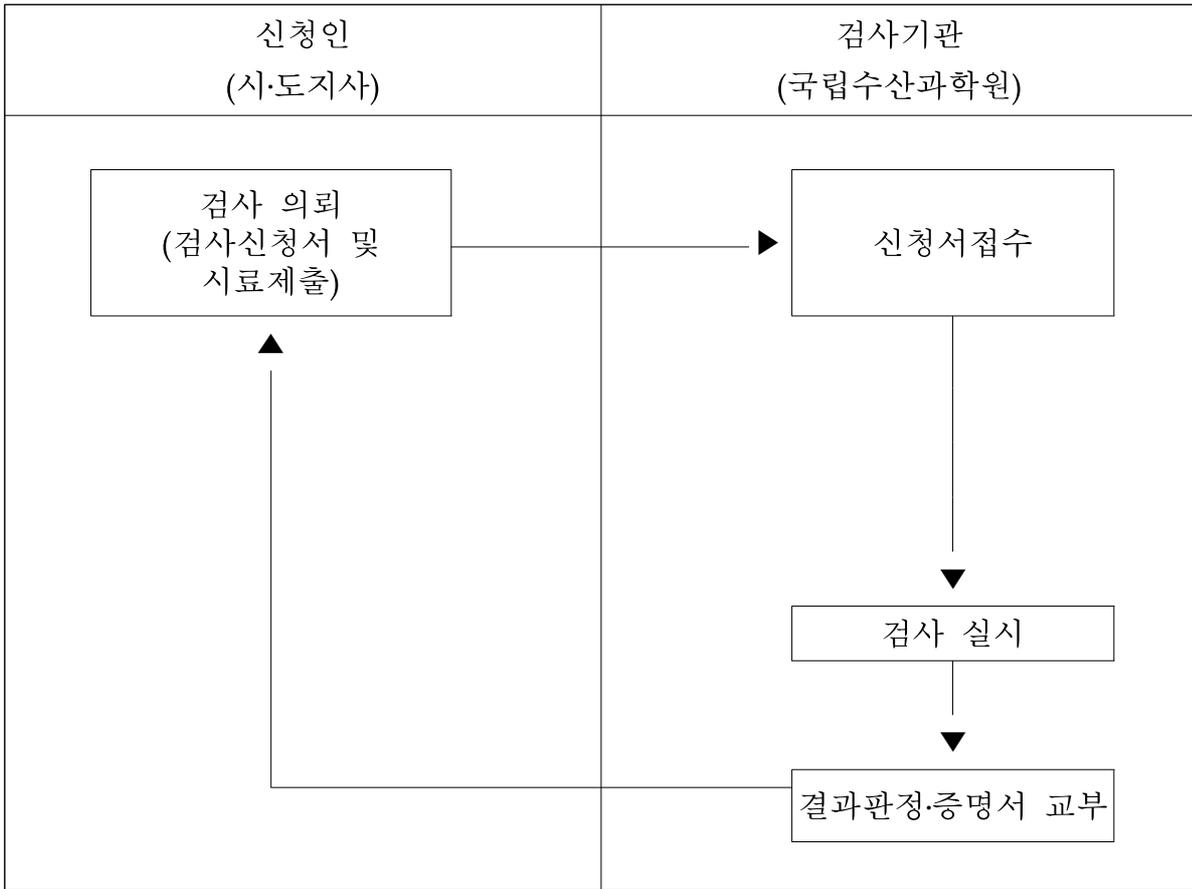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첨부물	검사시료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첨 11>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신청인				접수일	
검사시료	품종	크기(cm)			
임상검사 결과	육안 관찰				
	그 밖의 검사 결과				
정밀검사 결과	검사항목	합격기준	검사결과	판정	비고
종합의견					
검사기간					
※ 이 질병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부터 15일입니다. - 검사기관 : ○○○○○기관/센터 (연락처 : ○○○ -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류 수산생물의 전염병 검사 결과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width: 100px; height: 8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0 auto;"> 직인 </div>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 12>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신청기관)	담당자	(연락처 :)
검사기관	증명발급일	
양식장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검사 완료 확인 사항	품종	
	시료채취 단위시설	<input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일부()
	양식단위 식별번호	
	검사완료물량 (마리수)	
방류 관련 사항	방류완료물량 (주관기관명, 마리수)	
	방류(예정)물량 (사업금액, 마리수)	
	방류(예정) 장소	
	방류(예정) 일시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류 수산생물의 전염병검사 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의 장 (직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별첨 13>

구분	구분	품종명	검사항목	합격기준
해면 품종	방류 품종	넙치, 문치가자미, 돌가자미, 강도다리, 쥐노래미, 볼락, 황점볼락, 조피볼락, 개볼락, 붉은쏨뱅이, 쏨뱅이, 돌돔, 참돔, 감성돔, 강담돔, 동갈돔돔, 농어, 점농어, 능성어, 대구, 가숭어, 민어, 참조기, 황복, 자주복, 쥐치, 말쥐치, 뚝지, 자바리, 뱅에돔, 짱뚱어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불검출
		전복, 오분자기 비단가리비, 참가리비, 개조개, 개량조개, 북방대합, 꼬막, 왕우럭, 백합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 누스만해당한다), 흰반점병	''
		대하, 보리새우, 물렁가시붉은새우, 가시배새우	흰반점병, 타우라증후군	''
		꽃게, 민꽃게, 왕밤송이게(털게), 해삼, 바윗털갯지렁이, 참문어, 소라	<u>흰반점병</u>	''
내수면 품종	방류 품종	잉어, 붕어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잉어봄바이러스병	''
		동자개, 메기, 대농갱이, 미꾸라지(미꾸리)	잉어봄바이러스병	''
		쏘가리, 꺾지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
		뱀장어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
		은어	유행성궤양증후군	''
		참게, 동남참게	흰반점병	''
		자라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
다슬기, 기수재첩	흰반점병	''		

※ 방류품종 이외 품종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항목 및 합격기준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첨 14>

유전적 다양성 분석용 시료 제출서					
기관	사업주관 기관명			연락처	
	담당자			수송방법	
종자 관련 사항	품종	개체수, 크기(cm)	업체명 (대표자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방류 관련 사항	방류수량 (사업금액, 천원)				
	방류(예정)장소				
	방류(예정)일시				
<p>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u>유전적 다양성 분석용</u> 시료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출기관의 장 (직인)</p> <p>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귀하</p>					
<p>첨부물 : <u>유전적 다양성 분석용</u> 시료</p>					

<별첨 15>

이행확약서

- 방류품종 :
- 방류해역 :
- 물 량 : 마리(kg)

상기 종자에 대하여 방류 후 1개월 이상 방류해역에서 종자의 포획이 우려되는 어구를 사용하는 어업에 대한 조업 금지 및 불법조업 감시 업무를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관할 어촌계장 : ○ ○ ○(인)

○○○시·도지사 귀하

<별첨 16> 지자체 수산자원조성 연구시설 지원사업

< 사업개요 >

- 배 경 : 지역 특성에 적합한 우량종자 생산체제를 구축하여 방류함으로써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생산력 증대 도모
- 사업계획
 - 보조금액 : 당해연도 편성액 기준(지특회계)
 - 지원조건 : 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

< 추진체계 >

1. 사업의 주요내용 및 시설

- 우량 수산종자생산을 위한 종자배양시설, 연구시설 및 그 부대시설 신축·보수·보강

2. 사업계획의 수립

-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조성연구시설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당해연도 사업비를 감안하여 시설규모, 생산능력, 시설물 설계, 연차별 시설 및 집행순기, 집행계획 등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3. 사업추진협의 및 자문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필요시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수산자원공단, 지구별·업종별 수협, 학계,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시설한다.
- 배양시설 및 특산종자관리시설의 시설규모, 생산능력, 시설물 설계, 생산품종에 대한 세부시설 및 설계기술 등에 대하여도 상기 사항을 준용한다.

4. 사업의 관리

- 시·도지사는 건설시공을 위해 시공현장에 공사감독관을 지명하여 감독한다.
- 시설설계는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정부노임단가와 기획재정부 등록 가격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 또는 예산회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지조사, 시설설계, 시설규모 등에 대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기술지원, 자문, 검토의견 등 협조 요청을 받을 때에는 적극 협조한다.
- 시·도지사는 준공된 시설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감독

- 사업량과 보조금은 당해연도 예산 내역서에 의하며, 총사업비가 내역서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부담으로 한다.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 보조사업의 폐지승인을 얻은 때 및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결산을 하여 익월 2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결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본 지침이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보조금의 집행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거 집행하여야 한다.